

#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운영지침

제정 2008. 03. 31.  
개정 2009. 07. 14.  
개정 2015. 11. 10.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(이하"고문변호사단"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고문변호사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이 회 소속회원의 신청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선정한다.

②위원회는 신청자들의 경력, 연령, 개업년수, 사건수임건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미신청회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.

제3조(임기)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4조(직무)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중소기업회원에 대한 법률상담
2. 중소기업회원에 대한 법률원조사건의 수행
3. 기타 위 각 호와 관련된 업무

제5조(자격상실)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사망 또는 타 회로의 전회
2. 사임
3. 고문변호사로 부적합하다고 회장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한 때

제6조(고문변호사 명부) 위원회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명부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·비치하여

야 한다.

### 제3장 중소기업회원의 등록신청 등

제7조(등록신청) ① 중소기업회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회원등록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 이 회 또는 회가 지정하는 곳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중소기업회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를 제외한 종업원 2인 이상의 기업으로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. (개정 2015. 11. 10.).

③ 위원회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기업회원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회원증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교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명부비치) 위원회는 중소기업회원명부(별지 제4호 서식)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명부변동신고) ① 중소기업회원은 명부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명부변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0조(등록취소) ① 위원회는 중소기업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폐업한 때
2. 회비를 미납한 때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기업회원등록취소통지(별지 제5호 서식)를 하여야 한다.

### 제4장 중소기업회원의 권리와 의무

제11조(권리) 중소기업회원은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, 법률원조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.

제12조(의무) ① 중소기업회원은 위원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중소기업회원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, 위원회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하여

야 한다.

제13조(고문변호사 위촉 의뢰)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고문변호사 명부상의 순번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. (개정 2009. 7. 14.)

② 중소기업회원은 중소기업고문변호사 명부상의 변호사를 지정하여 위원회에 위촉을 의뢰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7. 14.)

③ 위원회는 1인의 고문변호사에게 1년 동안 5개 기업을 초과하여 중소기업회원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. (개정 2015. 11. 10.)

## 제5장 법률상담과 법률원조

제14조(법률상담) ① 고문변호사의 중소기업회원에 대한 법률상담은 면접, 서면, 전화,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② 법률상담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기업회원은 지정된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. 단, 지정된 고문변호사가 유고시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고문변호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
④ 고문변호사는 성실한 자세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상담에 응하여 그 법적 해결방안을 가급적 제시하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중소기업회원이 출연한 회비(공익단체 또는 금융기관 지원금 포함)로 지급한다.

제15조(위임) 고문변호사단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.

부 칙 (2008. 03. 31.)

이 지침은 2008. 3. 3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9. 07. 14.)

이 지침은 2009. 7. 14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 11. 10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5. 11. 10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에 등록된 중소기업회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별지 제1호 서식>

### 중소기업고문변호사명부

회원번호	성명(한문)	위촉일	해촉일	해촉사유	비고

〈별지 제2호 서식〉

기업회원등록신청서								
신 청 인	기업 체명	(한자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대 표 자	(한자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	
	업 종			사 업 자 등록번호				
	주요 제품							
	소재지							
	경영 형태	(가족경영) (전문경영) (기타)		기업형태	(법인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개인)			
	종업 원수	상용:          명, 일용:          명		설 립 일	년 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 일			
	( )년말	총자산			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년도	매출액		
		자본금				당기순 이익		
	연락처	기업체 전화		기업체 팩스	대표자 자택전화		기타 연락처	
홈페이지			e-mail					
<p style="margin: 5px 0;">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기업회원 등록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: 20px 0 5px 300px;">20          .          .          .</p> <p style="margin: 0 0 5px 300px;">신청인(대표자)    (인)</p> <p style="margin: 10px 0;">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귀중</p>								
						접수점 포명		
첨 부 서 류	□ 사업자등록증 사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.....          1부							
							등록연 월일	
							등록 번호	

〈별지 제3호 서식〉

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
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회원증서

기업체명 :

대표자성명 :

등록번호 :

유효기간 : 20 . . . . ~ 20 . . . .

위 기업체는 본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회원임을 증명함.

20 . . . .

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

회 장

<별지 제4호 서식>

중소기업기업회원명부			
등록연월 일	20 . . . .	회원등록번호	
기업회원 사		사업자등록번호	
대표자성 명		주민등록번호	
사업장소 재지			변경연월 일
			확인인
전 화 / 팩 스	전화	팩스	
경영형태	(가족경영) (전문경영) (기타)	기업형태	(법인) (개인)
종업원수	상용:   명, 일용:   명	설 립 일	년   월   일
등록취소	취소연월 일	취소사유	확인인
기타특기 사항			
비고			



